●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덴마크의 공공도서관법

제1장

공공도서관은 문화발전을 돕는 소설이나 비소설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널리 보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얻을 수 있다.

제2장

이 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 공공도서관은 다음의 제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조 1. 도서관은 자치단체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또는 공공도서관봉사를 주목적으로 조직된 협회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도서관위원회는 사서와 기타직원의 임명, 해임과 봉급을 정하며 도서관이 자치단체의 소유일 때는 자치단체의 법규와 내규에 상당하는 규약이 있어야 한다.

군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의 임명과 봉급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연2000크로네(krone)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도서관에 있어서의 사서는 감사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다.

기타의 도서관에 있어서도 사서를 임명하기 전에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도서관의 내규는 문교부장관이 규정한 규칙에 의하여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내규는 도서관의 관리규칙과 그 봉사구역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도서관의 내규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도서관장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공공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자치도서관이나 협회소유도서관이 만약에 그 도서관사업을 중단하였을 때에 자치단체가 그 도서관사업을 단속코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은 자치 단체에 인계하여야 하며 자치단체가 도서관사업의 단속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재산은 문교부장관이 그 처분을 결정한다.

4. 도서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무료로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모든 시립도서관에서는 참고자료가 있는 무료공공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장이나 공공도서관외 국가심의회의 권고에 따라 문교부장관은 지방관계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얻은 후에 지방도서관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도서관의 작업계획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국가보조의 계산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도서관은 문교부장관이 제정한 양식에 따라 과거 1년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군립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위원회, 군위원회 및 도서관구역 내에 있는 교구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이사회가 대표가 된다.

제2조 1950년 4월 1일자로 공공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지못한 자치단체의 자치체위원회(4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는 최소한 투표인 10%(최소한 40명)의 지지를 얻은 지방도서관협회의 청원으로 본법에 의하여 청원서 접수후 1년 이내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조 비지방자치단체도서관(자치 또는 협회소유)의 장서, 정리 및 운영이 같은 종류나 규모의 단체에 있어서의 도서관표준보다 현저하게 미달될 때에는 도서관장이나 국가심의회로부터의 이의나 자치단체로부터의 보고서를 받고난 후에 문교부장관은 문교부가 정한 기간내에 자치단체의 도서관을 설립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문교부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과 국가심의회로부터의 권고에 따라 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립된 공공도서관의 설립 또는 유지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문교부장관은 도서관장과 국가심의회의 권고에 의하여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유지하도록 협력할 것과 그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연합체의 형성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본항의 규정이행에 관한 세부 규칙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제1조 본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공도서관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수입과 그 지방의 보조금과 함께 자치단체의 충분한 보조를 받아야 한다.

제2조 도서관장과 국가심의회의 권고에 따라 문교부장관은 직원의 봉급, 장서 유지에 관한 각종의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적, 재정적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제3조 군도서관은 군심의회가 정한 연간보조금을 군심의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4조 국가보조는 일반적으로 한 군—한 지구—또는 한 교구의 1개 도서관에 교부된다. 예외적으로 그 지방의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청원이나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교구내에 있는 수개의 도서관에 국가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지구나 기타 작은 구역에 있어서의 수개 도서관을 들 수 있다.

제5조 여러가지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봉사하는 도서관(예 : 선원, 결핵환자)은 도서관장이나 국가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본법의 정하는에 의하여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동일지역내에 국가보조를 받는 도서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치체국민학교의 소년도서관에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자치단체내의 소년도서관은 하나의 행정체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별개의 소년도서관의 설립에 관하여서는 지방교육국과 교사회와 상의하여 자치단체심의회가 결정한다.

제1조 및 2조의 규정은 소년도서관에도 준용한다.

제4장

국가보조의 일부는 도서관의 유지를 위하여 연간보조금으로, 또 일부는 도서관의 설립이나 재조직에 교부된다.

제 5 장

제1조 해당회계년도에 국가로부터 개인도서관에 교부되는 연간보조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1. 기본보조는 각 도서관이나 도서관단체에 교부되며 지난 회계년도의 자방보조로 규정된 최초의 25,000Krone의 80% 해당액을 다음 25,000Krone의 40%, 그리고 50,000 Krone를 초과할 때에는 전체의 25%를 교부되어야 한다. 기본보조를 받을 수 있고 50,000Krone 이상의 지방보조를 받는 도서관은 지방보조의 15%에 해당하는 특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특별보조는 서적의 구입에 충당된다. 그러나 50,000Krone를 초과하는 지방보조의 수입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도서관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연간임대료와 전기 및 연료비는 국가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방보조비의 일부로 취급한다.

   자기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도서관장이나 문교부장관은 시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출한다.

   지방보조의 일부로 취급되는 임대료(전기, 연료대포함)는 화폐로 계산하여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조금이외에 자치단체에 봉사하기 위하여 각 군립도서관은 20,000Krone를 초과하지 않는 지방보조비의 20%해당액을가산한5,000Krone의 특별지방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문고(이동문고)로서 봉사하는 군립도서관은 추가로 자동차문고유지비의 50% 한도내에서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유지비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다.

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일반 공립도서관이 군립도서관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보다 광범한 지역내의 지방도서관에 대하여 무료로 비소설자료를 대출하고 기술적 원조와 기타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도서관을 군립도서관으로 인정하고 그 활정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2조 제1조1항과 2항에 규정된 비율에 대한 개정안은 1954~1955년의 의회에 문교부장관이 제안하여야 한다.

제6장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가보조는 국가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장

제1조 문교부장관은 문교부가 승인한 도서관 전영역에 걸친 계획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5장 제1조 1항에 거시한 국고보조의 2 $1/2$%의 지불을 보유할 수 있다.

제2조 다음과 같은 특별경비가 국가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1. 특수한 경우나 문교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도서관의 설립 또는 재조직에 있어 기본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금액(비용), 이러한 보조금은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지방보조의 45%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5장 제1조 1항에 규정된 기본국가보조의 5%해당액과
   1) 현존 Danish 작가
   2) 1946년 4월 1일 이후 Danish작가의 미망인으로서 재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특별기금

제8장

공공도서관의 국가감사원을 지도하는 도서관장은 관계조문에 따라 국고보조의 계산 및 배당에 책임을 지며 공공도서관을 지시 충고할 수 있다. 국가협의회의 조력으로서 도서관원들의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9장

제1조 공공도서관의 국가협의회는 동협의회의 의장이 될 도서관장 이외 13명으로서 구성된다. 즉

문교부 대표

Copenhagen 의 2개 국립도서관대표
Aarhus 의 국립도서관대표
시자치단체대표
지방자치단체대표
군단체의 대표
Copenhagen 시대표
현재 도서관협회의 대표 6명 즉, Danish 도서관협회대표 5명—시도서관 2명, 교구도서관 2명,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도서관협회대표 1명을 포함—그리고 학교도서관협회의 1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2조 처음의 3명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10명은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협의회에서 선출된다.
현존 도서관협회 또는 도서관관원협회가 해산되었을 때나 같은 기반으로서 새로운 협회나 활동이 생겼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국가협의회의 대표선출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제3조 국가협의회는 문교부장관이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를 소집한다.
최소한 1년에 2회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 5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장은 연간예산을 문교부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의한 도서관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사항은 국가협의회와 상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문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장

본법은 1946년 3월 30일자 법률 제184호로 개정된 1936년 4월 7일자 법률 제128호의 국가보조도서관법과 대체되며 195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